

##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 -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과 피의자 인권을 중심으로 -

안 상 운  
변호사

#### I. 들어가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은 특히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과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사법처리=소환=구속>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수사서류 등에 의한 형식적인 영장발부여부의 심사가 이제는 체포영장제도, 구속영장 발부시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와 구속적부심사제도, 기소전 보석제도의 도입과 긴급구속제도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장심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요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으레 '구속' 또는 '영장'(영장 '청구'가 아닌)이라고 보도해 온 취재관행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언론사의취재나 보도내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반론보도청구소송이 증가하여 왔고 또 언론사가 패소하는 경우도 늘어남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일보사가 1994년 3월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1996년 12월부터는 변호사에 의한 기사의 사전열람제를 도입하더니 금년 1월초부터는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본고는 이러한 언론의 대내외적인 취재 및 보도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수사절차에서의 바람직한 취재 및 보도방식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형사사건 보도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건보도란 일반적으로 범죄나 사고, 재난 등에 관한 보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형사사건 보도 또는 범죄보도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여기에는 범죄의 수사착수, 용의자의 체포, 구속에서부터 기소단계까지의 피의사실보도와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사를 포함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전에 보도가 선행되어 보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sup>1)2)</sup> 범죄란 반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어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그의 책임에 속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보도는 뉴스가치가 높아 사회일반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그것을 되도록 크게 눈에 띄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 경향이다.

2. 이처럼 범죄보도는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범죄보도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설사 범죄보도가 다소의 역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듯하다. 이와 같이 범죄보도는 첫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불러 일으키며 둘째, 시민들에게 범죄로부터 자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셋째, 형사사법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한 형사사법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넷째, 범죄를 낳게 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그 해결을 도우며 다섯째, 사회의 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등의 사회 적으로 유용한 역할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sup>3)</sup>

더욱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건이나 각종 대형권력형비리사건과 같이 의혹에 가득 찬 사건에 대한 폭로기사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수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사계시후에도 언론의 보도는 수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보도에 접한 시민의 제보로 수배중인 범인이 체포되는 예도 많다.<sup>4)</sup>

### III. 형사사건 보도의 문제점

그런 반면 형사사건 보도는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특히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문제라든가 범죄보도에 의한 범죄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더 나아가 범죄보도가 공정한 재판에 앞서 '여론재판'을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1. 형사사건 보도와 인격권의 문제

(1) 먼저 현재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는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계자를 「범인」 내지 「죄인」 시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언론은 '범인 체포', '범인 일망타진', '살해범 검거', '범인 수배', '진범', '조카 며느리가 진범', '살해범은 아들', '죽은 자와 죽인 자' 등 범인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보도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존엄권 내지 인격권(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과 무죄추정의 원칙(제 27 조 제 4 항. "모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을 침해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질서의 가치적인 핵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질서 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적인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가 아닐 수 없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커녕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취급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sup>6)</sup>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형법 제 126 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형사처벌 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판청구 전 즉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을 소송법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확실한 피의사실이 일방적으로 공표됨으로써 피의자가 받을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up>7)</sup> 특히 형사소송법 제 198 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주의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내용의 발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수사단계에 있어서 수사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가의 범죄수사권을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피의자의 개인적 명예와 인권을 옹호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피의사실에 대한 유죄여부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정되지 않는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그런데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피의자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옹호의 만전을 기하려는 현행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가령 피의자가 도주 피신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공개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폭악한 범인이 도주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sup>8)</sup>

(3) 그렇지만 아무리 범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크다 할지라도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사건보도의 영향을 경시할 수는 없다.<sup>9)</sup>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은 가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범인이라는 추정 내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예는 훼손되기 마련이다. 단순한 혐의는 오류의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사결과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반독자는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경찰에 연행된 사람을 보고 뭔가 했기 때문에 잡혔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설사 나중에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는 쉽게 시정되지 않는 것이다.

(4) 또한 그 혐의사실 이외의 주변사실까지 추측·과장되어 보도되거나, 나아가 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그의 부모나 가족 그 밖의 친척 또는 친구, 심지어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보도는 피의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나 기타 피의자 등과 관련된 제 3 자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sup>10)</sup>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유형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도되면 범죄 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오히려 보도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사건보도로 인해 관련 당사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져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잃고 절교나 거래정지, 따돌림 등의 사회적 보복이나 제재 또는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적지 않다. 추후 피의자나 피고인의 교정이나 갱생, 사회복귀에도 어려움이 있게 된다.<sup>11)</sup>

## 2. 형사사건 보도와 사법절차와의 문제

(1) 다음으로 형사사건 보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 형사사건 보도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범인시하는 보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배심원제도를 택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특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직업법관이 유죄 혹은 무죄나 형량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비교적 적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법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수많은 범죄사건을 재판한 경험도 있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곧바로 진실인 것으로 믿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2) 그러나 1990년 11월 발생한 '양평일 가족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당시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 정책에 의하여 흉악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대한 국민대중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언론이 이용되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90 고합 1013 호강도살인 등)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 1004 호)에 위배하여 공판전이 아닌 공판의 진행과정 자체 즉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과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의 의견진술까지도 모두 녹화케 하여 그것이 TV에 방영되었는데, 촬영방식도 법단의 위에서 한 것이라는 의심이 농후할 만큼 피고인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크게 비추어 이를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사건의 진범임이 틀림없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범행에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신고로 범인들이 체포되고 위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sup>13)</sup> 심지어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되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이 생략되고 당일 바로 결심이 되었는데 후에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제 1 회 공판기일에 모든 재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공판조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이 사실이 폭로되자, 변경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직접 신문부터 다시 진행하는 등<sup>14)</sup> 파행이 거듭되었는데도 언론은 재판의 적법절차에 대한 감시기능은 외면한 채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인상을 심어주는 데 급급했다.

이 사건은 판사도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에 완전히 초연할 수만은 없음을 보여 주었으며 아울러 '흉악범'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수사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송일 83-1, 1990. 3. 26. 개정, 민사 제 524 호)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은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15)</sup>

### 3. 형사사건 보도와 묵비권의 문제

(1) 또한 언론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갖는 또 다른 기본권인 묵비권(제 12 조 제 2 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을 부정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뒤 흔들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고속종 씨 사건<sup>16)</sup> 때 "여자 변덕에 진땀 빼는 수사"라느니 "연일 횡설수설 모른다고 끝까지 버텨, 진범확신 갖고도 결정타 없어 주춤", "드디어 자백하기 시작"(△△일보 81. 8. 13.)이라는 등의 표제가 그것이다.<sup>17)</sup> 최근의 이른바 한보 특혜대출비리 의혹사건에서 보듯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아 수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았고 또 그의 '입'을 자물쇠 통으로 풍자하여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사만평도 등장하였다. 물론 그 의미가 피의자의 입(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무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의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태도를 윤리상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을 포기하고 빨리 자백을 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 문제라는 것이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인식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그 동안 박상은 양 피살사건이나 최근의 김기웅 순경사건, 치과의사 모녀피살사건 등의 경우 우리언론은 위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나자 '과학수사', '증거수사'를 외치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물증은 없고 심증만으로 하는 수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오히려 수사단계에서는 빨리 자백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일삼아왔다. '자백 없어 미궁에 빠져'나 '수사진의 끈기 있는 승리'라는 표현이 단적인 예이다. 자백의 강요를 조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더 나아가 설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 진범임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sup>18)</sup> 우리 헌법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 12 조 제 7 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를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순순히 범행을 털어 놓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허위진술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를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영역내임을 간과한 채 마냥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자백을 강요하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태도를 비판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성격상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는 검찰수사 총책임자의 중간수사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다 보아야 했다.

(3) 또 언론은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죄인시하여 패륜아니, 악덕업자니, 뻔뻔하게도 범행을 부인한다느니, 인면수심이라느니, 짐승만도 못하다느니 라는 등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9)</sup>

#### 4. 공안사건 보도의 문제점

(1)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공안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형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정보원, 즉 수사기관과 피의자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안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로 인하여 언론은 추측 예상보도를 할 위험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언론은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은 관련자, 예컨대 가족이나 동료, 소속 단체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변호사 등을 적극 취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또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보도통제도 문제다. 수사기관은 엠바고를 너무 남용하고 있으며 보도시점과 방법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조차 엠바고를 거는 경우도 있다. 셋째, 그런 반면 수사기관은 언론의 특종욕과 선정성을 역이용하여 (특정)언론사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이를 보도케 함으로써 그 사실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여론을 떠보기도 한다. 예컨대, 1989년의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는 언론에 '김대중 총재의 대북친서 전달 가능성', '김대중 총재 5만불 수수설' 등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얼굴 없는 소식통'의 말이라며 보도하였다. 또 1996년 4월 실시된 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검찰은, 느닷없이 야당의 공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흘려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 당시 이른바 '공천헌금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후보자 국창근은 검찰의 발표내용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거나 그가 기소된 사실은 없다. 한편 국창근은 이를 최초로 보도한 연합통신을 상대로 정정보도(현재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승소하였다.<sup>20)</sup>

넷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대부분이다)도 함께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하기도 전에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도덕성을 파탄시켰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이른바 '부친서 성고문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권양이 문귀동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1986. 7. 16. 성고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직후 안기부는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하였고 언론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권양은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모욕 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후 권양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sup>21)</sup> 앞서 본서의원 사건때도 안기부는 처자가 있는 서의원이 고모 여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등, 사노맹사건의 박노해가 자라탕으로 보신하고 있으며 모 양과 깊은 관계가 있어 처와 불화가 생겼다는 등, 전대협 의장이 고급 로얄살롱을 몰고 다니면서(그 차는 150 만원에 산 중고차였다) 한 달에 수백만원을 쓰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발표하였다.

(2) 공안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언론은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여 왔다. 물론 언론은 자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취재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도 게을리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발표에 대하여는 그 배경과 의도, 발표사실의 신빙성, 완벽한(?) 조직 그림표를 완성하는 안기부의 수사능력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sup>22)</sup> 이는 1995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김동식은 체포된 직후부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체포되기 전 학생운동가출신인 허인회 씨를 포섭하기 위하여 그를 만나 자신이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허씨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제 10 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동식은 나중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안기부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허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가 김동식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면서 김동식이 자신을 만났다고 하는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부재사실증명)를 주장하는 등 안기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므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10여일간 단식을 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언론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동식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고 허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sup>23)</sup> 당초 안기부가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릴 때는 제 1야당이 창당된 직후로써 허씨가 그 당의 최연소 당무위원으로 발탁된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되었던 시기였다. 어찌됐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당한 의문과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도 우리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반면 피의자의 알리바이 항변은 대개 묵살하였다.

둘째, 언론은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를 기정사실로 인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는 어디까지나 그의 1 차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검찰수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치 그것이 기정 사실인 양 보도하여 왔다. 경찰이나 안기부의 수사발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정찰수사과정에서 걸러져서 법원에 기소되고 있으며 기소된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무죄판결을 선고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언론이 안기부의 수사발표 내용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제목에 있어서도 따옴표를 사용하여 그 내용이 안기부의 발표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이 취재 전에 의해 확인되거나 제 3의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객관화된 사실인 양 오도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무엇보다도 언론은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연행조사=구속=유죄',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혐의=친북혐의=빨갱이'라는 관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공안사건일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욱 더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1994년 8월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대학교양교재와 관련한 이른바 '경상대 교수' 사건 때,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우리 언론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경상대 교수 2명 영장", "장상환-정진상 교수", "안보법 적용...5명은 입건"(○○일보 94. 8. 31. 1면 톱기사) 이라고 마치 구속된 것처럼 보도하였고 심지어 같은 날짜 5면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지를 실었다. 그러나 보도 당일 아침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1994년 10월의 이른바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에서도 언론은 거의 대부분 1면 머릿기사 또는 톱뉴스로 "「북 장학금교수」 구속", "「혐의」 밀입북 등 친북한활동 여부, 북한 장학금 수령 여부", "북 장학금 교수 연행"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된 지 40여 시간 만에 풀려난 교수들은 안기부에서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sup>24)</sup> 또 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한 이원종 전 서울시장에 대하여 언론은 "오늘 구속", "구속 확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수사결과 검찰이 혐의 없는 쪽으로 결정하자 이제는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의 수사능력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결국 독자들에게 피의자(피연행자)에 대하여 유죄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언론은 '출두=사법처리=구속'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비공식적인 제보(확인)에 의한 보도 시 언론은 취재원(정보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안기부를 '당국'으로, 안기부 관계자를 '소식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문장의 형식도 주어가 없는 수동태 즉 '...로 알려졌다', '...라고 밝혀졌다'는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안기부의 발표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을 언론의 취재로 확인한 듯한 표현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보도내용도 기자에 의해 사실확인이 끝난 것처럼 '...로 밝혀졌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드러났다)', '...로 알려졌다', '...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로 전해졌다', '...로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는(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보도내용이 안기부의 수사발표에 의한 것이나 그의 주장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 '...라고 발표했다', '...라고 밝혔다'라는 표현방법과 '...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표현방식은 뜻하는 바의 의미와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주장했다', '발표했다', '밝혔다', '말했다' 등의 표현방법도 나름대로 미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언론은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아니한다.<sup>25)</sup>

수사기관의 발표 때까지 사실확인이 어렵다면 발표 후에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 취재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상 당연히 요청된다 할 것인데도 우리 언론은 수사기관의 수사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관행이 너무 쉽게 관변자료에 접근하고 또 관변자료를 너무 쉽게 믿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너무 쉽게 잊어 버린다는 것이다.

일곱째, 언론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에 대하여는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헌법 제 1 조)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다. 피의자에 대한 불법연행이나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언론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운동권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안기부의 말을 더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여덟째, 언론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말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국가기관의 정보통제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정보원에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3) 국내최대의 정보·수사기관인 안기부의 발표는 중요하다. 그런 반면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된다. 그러므로 언론은 안기부 발표에 대한 '무비판주의', '맹신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안기부를 감시하고 안기부의 발표내용을 확인 검증하려는 언론의 환경감시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 IV.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취재 및 보도환경의 변화

##### 1.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1)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 보장의 강화 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수사절차상의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6)</sup>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를 신설하였으며,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현행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 전 단계에까지 확대하는 적부심사청구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현행 구속영장 사무가 거의 전적으로 경찰수사자료에 의존하고 피의자의 변명 기회가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신구속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제가 구속영장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절차에 그친 점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래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 기본권은 신체활동의 자유와 신체적인 완전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격권의 발현이라고 설명되는 모든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심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이어야 하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구속의 목적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망, 증거인멸 및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구속의 교화적, 예방적, 응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언론의 보도 경향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이해하여 조급하게 처벌을 원하고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들면 일단 잡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3) 아무튼 개정전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환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것이 '사전' 구속영장이다)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행병인 경우나 긴급구속의 사유<sup>27)</sup>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제 206 조 및 제 212 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으면 되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제 207 조 및 제 213 조의 2; 이것이 '사후'구속영장이다) 만약 구속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기 보다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또는 긴급구속의 외양을 만들어 일단 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강제로 연행하여 조사한 다음 48 시간 내에 수사기록 등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수사기록 등만을 근거로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48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철야·심야수사를 강행하거나 또는 자백을 강요하거나 혹은 아예 수(십)일씩 영장 없이 구금한 뒤(이런 경우 으레 임의동행임을 강조한다. 박상은 양 피살사건 때 최초 용의자로 몰린 장모 군은 경찰에 연행된 후 15 일만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위법 탈법·편법수사가 일반화된 수사관행이었다.<sup>28)</sup>

(4)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용의자나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된 경우가 아닌 한 우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 200 조제 1 항) 만약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 200 조의 2 본문)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같은 조 제 2 항) 체포(긴급체포 된 경우도 포함)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 5 항 및 제 200 조의 4 제 1 항, 제 2 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 201 조 제 1 항 본문)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 201 조의 2 제 1 항)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2 항)

지방법원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 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같은 조 제 3 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 6 항)

## 2. 새로운 취재 및 보도환경의 변화

(1) 이와 같이 체포 및 구속의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인신구속의 유형이 다양화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동안의 취재나 보도관행도 차제에 바뀌어야 한다.

취재기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피의자가 일단 수사기관에 연행되면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소환단계, 체포영장청구 및 발부단계,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단계, 체포 및 구속적부심 청구단계 등에서 피의자(측)의 주장이나 의견을 그리 어렵지 않게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수사기록상의 조서나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만에 의하거나 또는 수사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의견만을 토대로 취재보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의견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무죄로 판명된다면 언론으로서의 언론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인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sup>29)</sup>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검찰이나 경찰 등 공기관의 발표 또는 흘러나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관계자도 취재하여 다면적인 보도를 함과 동시에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사실주의에 투철해야 하며 과장·왜곡·윤색·예단을 가진 보도 등을 일체 배격해야 한다. 추측이나 앞질러가는 보도도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취재는 형사사건 보도의 기초이다. 취재부족이야말로 오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취재 또는 보도 당하는 측의 불이익을 항상 의식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되는 측이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목격자까지도 포함한다.

(2) 더 나아가 언론은 불충분한 수사, 혹은 부당·불법수사를 폭로하여 그 비리를 비판해야만 한다. 경찰발표에 따라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범인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주게 된다. 피의자는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특성상 짧은 시간내의 취재 등에 의해 불충분한 취재나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보아 때로는 과거의 보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검증결과 과거의 보도에 잘못이나 불충분한 점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지면의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전한다면 독자들의 납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내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보도에서는 실명보도를 지양하고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본다.

## V. 형사사건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현행 형사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관 스스로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투철한 인권의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1. 실명보도의 기능과 문제점<sup>30)</sup>

(1) 언론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실명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sup>31)</sup> 원칙적인 실명보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첫째, 언론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진실보도의 의무가 언론에게 기본적으로 짐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경우는 보도해야 할 대상의 실체가 그만큼 부정확하게 전달돼 진상규명에 허점을 지니게 되고 사건의 배경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건 당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명예나사생활도 물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나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그 중요한 권리이며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알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명이나 익명이 보도의 원칙이 되어버리면 수사당국이 마음 놓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며 언론이 발표사실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져 오히려

인권침해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이 구속상태에 있는가를 사회가 알게 되는 것은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내포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져 수사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권력의 감시기능과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의 예방기능이 실명보도가 아닐 경우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명보도가 일종의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함으로써 권력의 범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범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범죄사건의 경우 실명으로 보도해야 주위로부터 관련된 제보도 받을 수 있어 유죄 쪽이든 무죄 쪽이든 진상규명이 더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32)</sup>

익명이나 가명보도가 진상의 추구에 허점을 지닌다고 하지만 공적 인물의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의 진상추구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이지, 읽고 난 직후에 잊고 말 이름이나 주소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알 권리는 주로 국가권력이나 공적 인물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한 평범한 시민의 사사로운 행위에까지 마음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보도가 관행이 될 경우 수사당국의 정보조작가능성이 커지고 고문 등 인권침해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이 언론에 대해서는 실명을 알리도록 하고 보도만은 익명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실명보도보다는 더 이상적인 보도태도라는 것이다.

또 실명보도가 범죄의 예방기능과 사회적 제재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책임이 일반인과는 다른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평범한 개인에게까지 언론이 실명을 통해 형벌 이외의 사회적 제재까지 가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실명 보도를 해야 제보도 가능해져 진상규명이 용이해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불명예를 확산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실명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는 속보나 해명 기사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설령 언론이 그렇게 사후적인 성실과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권리의 완전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 2. 익명보도의 필요성과 그 시행원칙

(1) 실명보도주의가 가져오는 인권의 침해사례는 상상외로 많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일단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실명보도가 되고 나면, 뒤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나 사생활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실명보도주의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다.<sup>33)</sup> 실명이 보도된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한 뒤에도 정상인으로서의 사회적 복귀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언론의 실명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는 법적 책임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범법을 했던 사람의 사회복귀의 어려움도

문제되지만 그 가족이 받게 되는 피해는 더욱 더 역울한 것이다. 큰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름과 함께 주소가 밝혀지고 때로는 가족의 사진과 이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실상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보도주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한 인권존중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범죄보도가 갖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유력한 수단임에는 틀림 없다.<sup>34)</sup> 일반시민의 보통의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를 모르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포착하여 판단하는 데는 별다른 불편이 없다.<sup>35)</sup>

(2)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실명보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익명보도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은 일응 국민의 알 권리다.<sup>36)</sup> 즉 뉴스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 그 자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의 운영상황이나 장래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정보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실명보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인에 한정되고 일반 사인은 익명으로 보도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sup>37)</sup>

공인은 크게 공무원(public official)과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s)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임명된 공직자 가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검사, 판사, 경찰관, 그 밖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적인 인물이란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중의 관심'(public interest)을 끌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기업, 재계단체, 학계단체, 정당, 노동조합, 학술·문화·의료·법률관계 등의 각종단체, 언론, 종교단체와 각 그 집단에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는 간부나 임원 및 연예인이나 인기스포츠의 유명선수 등이 포함될 것이다

(3)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이 실명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 법률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공인으로서의 적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문제를 내포하는 행위나 공공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실명보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직함과 경칭을 붙일 것이며, 전체적인 표현도 감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단정하여 주관적 형용사로 비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4) 익명보도주의의 원칙은 일반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여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을 찾는 일 등을 위해 스스로 실명보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그 호소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예외적으로 실명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각 보도기관의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3. 우리나라 실정법상 익명보도의 원칙

현행 법에도 특별한 경우에 실명보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1) 우선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소년법 제 68 조).

(2) 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 10 조, 제 72 조).

(3) 또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이법은 1994. 4.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

(4) 또 강간이나 강도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일부 제외)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그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 할 수 없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이 법은 1990. 12. 31. 부터 시행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지존파사건이나 온보현사건, 막가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언론은 그들로부터 성폭행이나 강도, 살인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학과, 부모의 직업 등의 인적 사항 게다가 신고한 여자의 옆모습을 찍은 사진도 보도하였다.

#### 4. 우리나라 판례상 익명보도의 원칙

익명보도의 원칙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다. 머나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최근 형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정면으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 나 24946 호 판결은 "수사담당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특히 형사사건 보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명보도주의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적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 전에 수용자의 대부분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보도대상이 된 자가

미지의 인물인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일률적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그 묘사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생각에 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밀줄은 필자, 이하 같음)

다만 위 판결은 "익명보도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원명시의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배경 또는 비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그 신원에 대한 정당한 공적인 이익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과 비범함을 상회하여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게 된다. 사건 관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신원확인보도는 공적 인물의 경우 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가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여 익명보도주의의 예외로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보도된 당사자는 공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므로 그의 신원을 명시한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규정상 그에 대한 보도혐의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고, 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그와는 무관한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언론사들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한편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 나 4659, 4666 호 판결도 "검사 등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 예컨대 수사활동상의 필요나 시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의 제기 이전이라도 피의사실을 신속히 공표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에 없는 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를 비롯하여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취재기자의 경우도 구속영장사본을 열람하였을 뿐 당사자나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마치 혐의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하였다.

(3) 다만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 나 19309 호 판결은 1994년 10월 발표된 안기부의 간첩단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귀국 후 원고의 활동과 관련하여 안기부의 발표 내용이나 구속영장에 원고가 입국한 이후의 활동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문사들이 '원고가 운동권의 움직임에 파악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등 원고가 입국 후 계속하여 간첩행위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원고의 입국목적과 보도자료에 나타난 위 한병훈 부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귀국 후 원고의 활동 내용과 관련한 피고 신문사들의 보도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입국목적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이 다소 추측에 기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각색하여 허위의 보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피고 신문사들은 원고가 보도내용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던 바, 당시 원고가 그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 신문사들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 신문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사용하여 위 사건을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더욱이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익명보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나 앞서의 판결과 상반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VI. 결 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기본권은 일률적으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또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동안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 권력(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비쳐왔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만을 무턱대고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가 사라진 지금에는 언론의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 단체가 1996. 4. 7, 새로이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며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며(제 4 조) 또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에 노력하고(제 5 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제 6 조)는 내용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준칙(제 2 조), 보도 준칙(제 3 조)<sup>38)</sup>, 사법보도준칙(제 4 조)을 정하고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제 7 조)<sup>39)</sup>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사가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변호사에 의한 사전기사열람제와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을 제정, 시행한 것은 인권신장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sup>40)</sup>

위 '사건보도기준'은 사건보도에 있어서 실명과 익명을 엄격히 구분하여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하며, 범죄인에게도 경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익명보도를 원칙이 아닌 예외로 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보여 진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나마 독자들의 반론과 정정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고정란을 두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언론계와 언론관련 유관단체 그리고 법률가단체 등이 함께 '보도와 인권'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취재보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주

1) 손정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검찰, 1990년 제 1집 (통권 100호), p.364.

2) 팽원순,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85년 봄호(통권 14호), p.7

3) 평천종신, "범죄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1987년 여름호(통권 제 23호), p.59.

4) 신 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언론중재 1985년 봄호(통권 제 114호), p.25.

- 5) 이상돈, "재판 전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방안", 언론중재 1985년 봄호(통권 제 14호), p.14.
-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PP.350-351.
- 7) 주석형법각측(상), 사법행정학회, 1985, PP.101-103.
- 8) 손창렬, op. cit., p.438.
- 9)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 24946호 판결.
- 10)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중재 1994년 가을호(통권 제 52호), p.19.
- 11) 평천종신, op. cit., p.60.
- 12) 한위수, op. cit., p.21.
- 13) 조용환, "재판을 통해서 본 90년의 인권", 인권보고서제 5집 (1990년), 대한변호사협회, p. 338.
- 14) 한겨레신문, 1990. 12. 29자, 15면.
- 15) 손정열, op. cit., p.433.
- 16) 1981. 7. 22. 밤 서울 원효로 1가 윤경화 씨 집에서 윤씨를 비롯하여 가정부와 양녀가 피살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그 해 8. 17. 윤씨의 조카며느리인 고숙종 씨가 진범이라면서 구속하였는데 이 때부터 언론사의 과잉보도는 서로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었다. 고씨의 친정과 출신학교도 알려졌고 미성년자인 네 자녀의 이름도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공무원이던 고씨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학에 다니던 두 딸은 중퇴했다. 심지어 수사 중에 고씨가 진범이라는 전제 하에 혈연범죄를 규탄하는 사설까지 나왔고, 사람을 것처럼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인면수심을 개탄하는 보도도 있었다. 고씨는 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 17) <좌담> 범죄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1985년 여름호(통권 제 15호), p.49.
- 18) 한위수, op. cit., p.19.
- 19) Ibid, p.23.
- 20) 서울지방법원 1996. 8. 1. 고지 96카기 2868호 결정. 이 결정은 필자가 알기로는 통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최초의 판례이다.
- 21) 서울고등법원 1990. 1. 19. 선고 89나 33482호 판결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6가합 5264호 판결.
- 22) 박영상, "공적보도자료와 오보: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언론중재 1995년 가을호(통권 제 57호), p.11.
- 23) 서울지방법원 1996. 11. 8. 선고 95고단 10657호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4카합 3122,3123호 판결.
- 25) 박영상, op. cit., p.12.
- 26) 대법원은 신설된 인신구속제도 및 기존의 구속, 구속적부심사, 보석제도 등 인신구속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1996. 12. 13. 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 요령](송형 96-3)을 제정하였다. 이 예규는 1997. 1.1. 부터 시행되고 있다.

27)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를 말한다.

2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 다 35155 호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되어 긴급구속을 당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법체포, 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긴급구속한 것이 아니라 임의 동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연행한 1991. 7. 8. 04:40 경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10. 01:35 분경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안기부 수사관이 원고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원고를 체포, 연행하여 긴급구속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하지도 아니하고 긴급구속 후 원고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도 아니 하였다면 그와 같은 불법 체포, 구금에 대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호 판결"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30) <특집>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 -일본사례연구-, 언론중재 1987년 여름호(통권 제 23 호), pp.31-33.

31) 유승삼, "실명보도와 민권", 언론중재 1992년 여름호(통권 제 43 호), pp.31-32.

32) Ibid.

33) Ibid.

34) 손창열, op. cit., p.452.

35) 평천종신, 범죄보도와 인권, 인권과 범죄보도, 일본평론사, 1986, p.143.

36) Ibid.

37) 한위수, op. cit., p.22.

38) 특히 제 6 항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9)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0) 이혁주, "인권보호에 최선 다하자는 다짐- 조선일보 변호사 사전기사열람제 시행 배경과 성과-", 신문과 방송 1997년 2월호(통권 제 314 호), pp.116-121.

- 연세대 법대, 고려대 언론대학원(언론학 석사)
- 저술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공안사건보도의 문제점」 외
- 현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